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(이하 “휴면계정”)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)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, 「서민금융법」 개정(2025.3.18일 공포, 2025.9.19일 시행)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

3. 주요내용

가.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·출입 허용 (승 §39-2(3), §42①(3))

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완계정의 조성범위에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나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통신업권의 범위 (승 §55②)

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(이동통신사,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)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되고, 이 중 협약 대상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

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함

다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 추가 (승 §55①(18))

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
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
으로 포함

라. 기타 자구수정 (승 §21①, §55①(17))

시행령상 협약의무대상인 한국장학재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
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오기정정 등 수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19조제2호”를 “제19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서민금융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라 한다)으로의 진출

제4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서민금융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라 한다)”을 “보완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제55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73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

- ② 법 제75조제3항제3의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개인가입자(전기통신사업

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가입자는 제외)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.

③ 법 제75조제3항제3의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어 실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을 위한 자료·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1조(지원금의 감독 등) ① 진	제21조(지원금의 감독 등) ① ---			
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	-----			
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호에	----- 제19조제2항제2			
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	호-----			
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	-----			
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	-----			
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	-----			
여 확인해야 한다.	-----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
제39조의2(휴면계정의 용도) 법	제39조의2(휴면계정의 용도) ---			
제42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	-----			
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	-----			
의 용도를 말한다.	-----.			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			
<신 설>	3.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서			
	민금융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			
	정”이라 한다)으로의 전출			
제42조(보완계정의 조성 등) ①	제42조(보완계정의 조성 등) ① -			
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	-----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”이란	-----			
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.	-----.			
1.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	1. ----- 보완계정-			
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	-----			
라 한다)의 운용상 일시적으	-----			

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
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
다음 각 목의 차입금

가.·나. (생략)

2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⑨ (생략)

제55조(협약 체결대상 등) ① 법
제75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
호의 자를 말한다.

1. ~ 16. (생략)

17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장학
재단

<신설>

18. (생략)

<신설>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
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
입금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협약 체결대상 등) ① ---

-----.

1. ~ 1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18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73조의3
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자
산관리회사

19. (현행 제18호와 같음)

② 법 제75조제3항제3의4호에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제1
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
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

② · ③ (생략)

⑤·⑥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13